

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2025. 6. 24.(화) 10:00

제255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추병수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I.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679호
- 나. 제 출 자 : 금천구청장
- 다. 제출일자 : 2025. 5. 29.
- 라. 회부일자 : 2025. 5. 29.

II.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50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금천구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금천구의회 의 승인을 받고자 함.

III. 참고사항

○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150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 관련서류 : 2024회계연도 결산서(안)

IV. 푸른미래도시국 결산

1. 푸른미래도시국 결산 총괄

가. 세입 총괄

(단위:원)

| 구분 | 예산현액 | 징수결정액(A) | 세입결산액(B) | 징수율 (B/A) |
|-------|---------------|----------------|---------------|--------------|
| 계 | 7,957,238,000 | 10,182,231,670 | 8,355,668,300 | 82% |
| 주 택 과 | 1,035,810,000 | 2,876,063,730 | 1,313,933,170 | 45.7% |
| 도시계획과 | 20,000,000 | 24,850,650 | 24,850,650 | 100% |
| 주거정비과 | 650,000,000 | 637,395,000 | 637,395,000 | 100% |
| 공원녹지과 | 6,134,449,000 | 6,145,369,050 | 6,137,780,040 | 99.8% |
| 건축과 | 116,979,000 | 498,553,240 | 241,709,440 | 48.4% |

나. 세출 총괄

(단위:원)

| 부서명 | 예산현액(A) | 지출액(B) | 다음연도 이월액 | 집행잔액 | |
|-------|----------------|----------------|----------------|---------------|--------------|
| | | | | 금액 | 집행률 (B/A) |
| 계 | 44,040,678,350 | 31,818,531,440 | 10,408,580,420 | 1,623,800,550 | 72.2% |
| 주 택 과 | 1,488,770,000 | 1,385,570,700 | 0 | 89,668,640 | 93% |
| 도시계획과 | 1,236,321,000 | 687,727,100 | 479,173,400 | 51,518,000 | 55.6% |
| 주거정비과 | 2,784,882,000 | 1,776,597,160 | 501,201,400 | 370,563,840 | 63.8% |
| 공원녹지과 | 38,013,523,350 | 27,521,331,920 | 9,428,205,620 | 1,042,777,630 | 72.3% |
| 건축과 | 517,182,000 | 447,304,560 | 0 | 69,272,440 | 86.4% |

다. 집행잔액

○ 예산잔액 사유별 현황

(단위:원)

| 부서명 | 예산현액 | 집행잔액 | 사유별 | | |
|-------|----------------|---------------|-------------|---------------|------------------|
| | | | 보조금 정산잔액 | 예산절감액 | 계획변경등 집행사유미발생 |
| | | | 낙찰차액 | 지출잔액 | 예비비 |
| 계 | 44,040,678,350 | 1,623,800,550 | 209,491,300 | 4,543,000 | 49,442,400 |
| | | | 205,441,090 | 1,154,882,760 | 0 |
| 주택과 | 1,488,770,000 | 89,668,640 | 17,685,120 | 1,350,000 | 0 |
| | | | 18,513,010 | 52,120,510 | 0 |
| 도시계획과 | 1,236,321,000 | 51,518,000 | 17,902,500 | 150,000 | 0 |
| | | | 16,678,000 | 16,787,500 | 0 |
| 주거정비과 | 2,784,882,000 | 370,563,840 | 128,520,400 | 780,000 | 12,605,000 |
| | | | 1,710,000 | 226,948,440 | 0 |
| 공원녹지과 | 38,013,523,350 | 1,042,777,630 | 38,680,630 | 1,467,000 | 36,837,000 |
| | | | 168,539,570 | 797,253,430 | 0 |
| 건축과 | 517,182,000 | 69,272,440 | 6,702,650 | 796,000 | 400 |
| | | | 510 | 61,772,880 | 0 |

라. 푸른미래도시국 집행률 저조사업

(단위 : 원)

| 부서 | 세부사업명 | 예산현액 | 지출액 | 집행잔액 | 집행율 | 집행잔액 과다 사유 |
|-----------|-------------------------------------|-------------|-------------|-------------|-------|---|
| 주택과 | 위반건축물 정비 | 5,050,000 | 3,100,000 | 1,950,000 | 61.4% | 무허가건물 철거 용역 미집행 |
| 도시 계획과 | 지구단위 계획 수립 | 10,872,000 | 4,476,000 | 6,396,000 | 41.2% | 신문광고 사유 미발생 및 공동위원회 위원 수당 집행잔액 발생 |
| 도시 계획과 | 빛 공해 방지를위한 조명 관리 강화 | 4,520,000 | 2,270,000 | 2,250,000 | 50.2% | 빛공해 측정의뢰 관련 민원 미발생으로 측정 의뢰비 집행잔액 발생 |
| 주거 정비과 |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계획(모 아타운) 수립 | 350,920,000 | 178,692,000 | 131,574,400 | 62.5% | 모아타운 자치구 공모가 조기종료되어 모아타운 3차 수립 용역비 전액 불용(114,000,000) -모아타운2차수립 용역 설계변경으로 인한차액 발생(17,394,400) |
| 공원 녹지과 | 생태문화탐 방길 교육환경영 향평가 용역 | 50,000,000 | 33,042,000 | 16,958,000 | 66.1% | 낙찰차액 |
| 공원 녹지과 | 호암산 일대 역사문화 프로그램 운영 용역 | 60,000,000 | 23,991,280 | 36,008,720 | 40.0% | 기간제 근로자 직고용에 따른 행사운영비 불용 |
| 건축과 | 건축민원 처리 | 39,600,000 | 25,783,900 | 13,816,100 | 65.1% | 건축위원회 개최 횟수 감소 |
| 건축과 | 위법건축물 예방 관리 | 44,420,000 | 18,421,600 | 25,998,400 | 41.5% | 허가건수 감소에 따른 검사수수료 지급건수 감소 |

2. 예산의 전용

(단위: 원)

| 부서명 | 통계목 | 예산액 | 전용금액 | | 사유 |
|-----|-------|-------------|-------------|-------------|--|
| | | | 감액 | 증액 | |
| 주택과 | 민간융자금 | 140,000,000 | 140,000,000 | | 자치구에서 주민에게 직접 융자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아닌 안전진단 용역업체와의 계약을 통한 지출방식으로 적합한 통계목으로 전용 필요 |
| | 시설비 | | | 140,000,000 | |

3.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단위: 원)

| 구분 | 계 | | 명시이월 | | 사고이월 | |
|-------|----|----------------|------|---------------|------|---------------|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계 | 26 | 10,408,580,420 | 7 | 5,619,765,000 | 19 | 4,788,815,420 |
| 도시계획과 | 3 | 479,173,400 | | | 3 | 479,173,400 |
| 주거정비과 | 5 | 501,201,400 | 1 | 21,600,000 | 4 | 479,601,400 |
| 공원녹지과 | 18 | 9,428,205,620 | 6 | 5,598,165,000 | 12 | 3,830,040,620 |
| 건축과 | - | - | - | - | - | - |

4. 성과 보고

(단위: 원)

| 부서명 | 성과목표 | | | | | | 결산액 | | |
|-------|-----------|------------|-----|----------|----|-----|----------------|----------------|----------------|
| | 전략 목표수 | 정책 사업목표 | | 성과달성도 | | | 결산액 | 전년도 결산액 | 비교증감 |
| | | 개수 | 지표수 | 초과 달성 | 달성 | 미달성 | | | |
| 계 | 5 | 8 | 15 | 0 | 14 | 1 | 31,818,531,440 | 32,763,460,300 | -944,928,860 |
| 주택과 | 1 | 1 | 3 | 0 | 3 | 0 | 1,385,570,700 | 543,413,120 | 842,157,580 |
| 도시계획과 | 1 | 1 | 2 | 0 | 2 | 0 | 687,727,100 | 1,835,670,130 | -1,147,943,030 |
| 주거정비과 | 1 | 1 | 3 | 0 | 3 | 0 | 1,776,597,160 | 4,352,743,010 | -2,576,145,850 |
| 공원녹지과 | 1 | 4 | 4 | 0 | 3 | 1 | 27,521,331,920 | 25,590,753,000 | 1,930,578,920 |
| 건축과 | 1 | 1 | 3 | 0 | 3 | 0 | 447,304,560 | 440,881,040 | 6,423,520 |

가. 주요성과

- 이웃과 소통하는 안전한 주거문화 조성
 - 노후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비용 및 공동체 활성화사업 지원
 - 주택공사 실태점검 및 위반건축물 관리
- 첨단산업과 주거문화가 조화되는 행복도시 금천 구현
 - 고밀도 복합개발의 역세권 활성화사업추진으로 지역필요시설 확보
 - 공군부대 부지가 국토부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확정, 국토부 컨설팅 우선 지원대상으로 선정
- 맞춤형 주거정비를 통한 행복도시 조성
 -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통한 주거환경개선
- 호암과 한내의 힐링 여가성역, 금천
 - 금천체육공원 전망대 조성 및 금천구 랜드마크 조성
 - 시흥계곡 오미원생태공원 조성으로 주민 여가 생활공간 확충
 - 안양천 생태복원을 통한 주민 친화적 하천 환경 조성
- 안전하고 살기좋은 건축환경 조성
 - 위반건축물의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관리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 공공건축물 상하반기 외부전문가 하자 합동점검 실시
 - 소규모 노후건축물 862개소 안전점검 실시로 안전사고 예방

나. 정책사업목표 현황

(단위 : 원)

| 정책사업목표 | 성과 지표수 | 달성 지표수 | 단위 사업수 | 결산액 |
|--|-----------|-----------|-----------|---------------|
| 이웃과 소통하는 안전한 주거문화 조성 | 3 | 3 | 4 | 1,004,708,420 |
| 첨단산업과 주거문화가 조화되는 행복도시 금천 구현 | 2 | 2 | 2 | 512,944,170 |
| 맞춤형 주거정비를 통한 행복도시를 조성 | 3 | 3 | 3 | 1,505,980,960 |
| 호암과 한내의 힐링 여가성역, 금천 | 1 | 1 | 2 | 7,050,752,090 |
| 호암과 한내의 힐링 여가성역, 금천 | 1 | 0 | 1 | 4,651,258,590 |
| 호암과 한내의 힐링 여가성역, 금천 | 1 | 1 | 1 | 406,846,700 |
| 안전하고 살기좋은 건축환경 조성으로 주민이 행복한 도시환경 조성 | 3 | 3 | 4 | 347,873,100 |

V. 검토의견

1. 세입·세출 결산

- 2024회계년도 푸른미래도시국 세입결산액은 83억 5,566만 8천원으로 징수결정 대비 징수률은 82%이며,
- 예산현액 440억 4,067만원에서 지출액은 318억 1,853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6억 2,38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72.2%이며 집행잔액 발생원인은 보조금정산잔액 2억 949만원, 낙찰차액 2억 540만원, 예산절감액 454만원, 계획변경 등 집행미사유 4,944만원 지출잔액 11억 5,488만원임.

2.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 명시이월은 총 7건 56억 1,976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음.
 - 사고이월은 총 19건 47억 8,881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음.
- 예산의 이월은 불가피한 여러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다고 하지만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므로 집행부서는 사업 초기부터 세심한 관리를 통하여 이월을 최소화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됨.

3. 성과 보고

- 전략목표 : 도시 주거환경에 새로운 변화를 이끄는 푸른 미래도시조성
푸른미래도시국은 1개의 전략목표와 15개의 정책사업목표를 정하였고, 성과지표 14개를 달성함.

4. 검토의견

- 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해 연도내 사업시행 가능여부와 예상되는 제반 문제점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여 이월할 경우 당해연도에 필요한 사업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부적절한 상황이 발생하는 만큼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로 예산을 편성하여 당초 계획 대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관계법령

☞ 예산·결산 자료

「지방자치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951호, 2024. 1. 9., 타법개정]

제150조(결산)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그날부터 5일 이내에 시·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재정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91호, 2023. 8. 8., 타법개정]

제49조(예산의 전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轉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다. <신설 2020. 6. 9.>

1.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2.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전용을 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전용 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9.>

④ 제1항에 따라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결산서에 명시하고,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20. 6. 9.> [전문개정 2011. 8. 4.]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②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오랜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3. 공익·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4. 정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 ③ 계속비의 회계연도별 소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계속비의 사업완성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④ 제1항 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월 할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2011. 8. 4.]

「지방회계법 시행령」

[시행 2024. 4. 16.] [대통령령 제34408호, 2024. 4. 16., 일부개정]

- 제10조(결산서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14조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에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 전단에 따른 감사위원(이하 “감사위원”이라 한다)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16.>
-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결산서와 감사의견서를 받은 경우 받은 날 부터 7일 이내에 감사의견서와 감사위원의 성명을 지방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0년 이상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4. 4. 16.>